

# 지급결제의 이해 및 『전자금융거래법』 개정(안) 관련 제언

2022. 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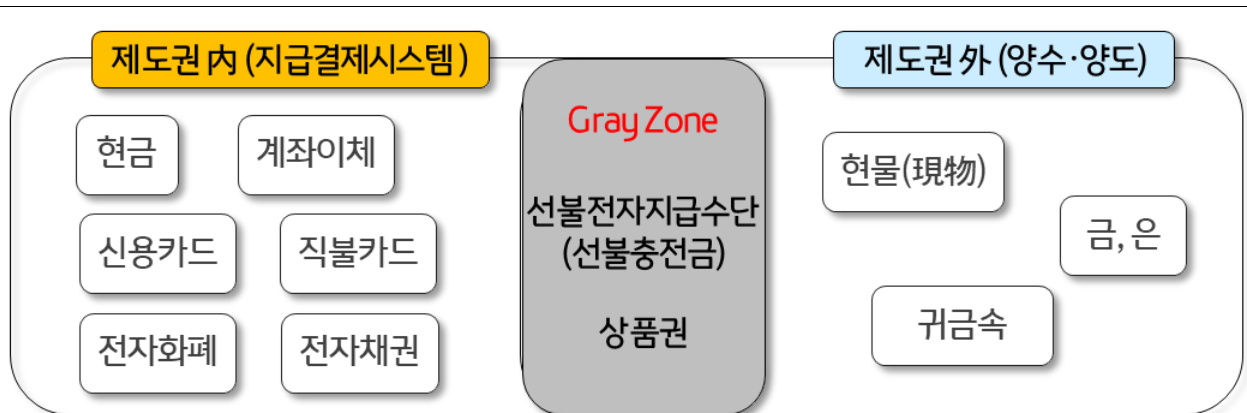
1. 화폐의 발달과 지급결제의 개념
  2. 전자금융거래법 개정(안) 관련 주요 내용 및 제언
  3. 시사점
- [붙임1] 전자금융거래법의 특징, 주요 개념 및 한계점
- [붙임2]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종 및 전자지급수단



[Executive Summary]

- 인류 최초 경제활동인 물물교환을 지나 여러 형태의 ‘화폐’가 지급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와 함께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이 등장
  - ‘물물교환’과 ‘금속화폐’는 현물(現物)과 연관이 깊어 지급결제보다는 ‘양도양수’에 가까움
    - 양도양수(transfer)는 재산·물건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을 의미하며 법·규정에 기초한 지급결제와 달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거래가 결정되는 성격이 강함
  - 이후 등장한 ‘주소화폐’는 국가, ‘신용화폐’는 여러 경제 주체들이 신용도를 바탕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개념이며 과거와 달리 다양한 지급수단과 제도·시스템이 등장
  
- 한편,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선불전자지급수단(선불충전금)의 경우, 상품권과 유사하게 지급결제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관련 법·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
  - 2021년 기준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선불충전금(미상환잔액) 규모는 2조 9,934억원으로 2017년 1조 2,484억원 대비 140%나 증가
  - 2021년 기준 매출 상위 10개 업체의 부채비율은 평균 460%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기업들을 감독할 규정이 『전자금융거래법』에서는 전무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음
    -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지급수단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법적인 기존 제도 상의 전자지급수단 유형화에만 집중하고 감독법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

[그림] 지급수단의 구분



자료: 작성자 재구성



- 지급결제는 다양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지급인(채무자)과 수취인(채권자) 간의 채권·채무관계를 화폐가치의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것을 의미
  - 통상적으로 지급결제는 지급수단의 『제시(지급, payment)』에서 시작하여 금융회사 간의 『청산(cleaning)』과 『결제(settlement)』 과정을 통해 마무리
  - 지급은 지급인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수취인에게 현금을 직접 주거나 신용·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에 개설된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하는 경제행위를 의미하며 지급결제가 시작되는 단계
    - 지급은 정형화된 제도와 금융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래인 반면, 양도양수는 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거래가 결정되는 성격이 강함
  - 청산은 상거래 등에서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사용되었을 때 청산기관(cleaning house)이 개입하여 지급인과 수취인이 주고받은 비현금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제공한 금융회사 간에 최종적인 자금이동 내역을 전달(transmitting)하는 것을 의미
  - 결제는 청산 기관에서 확정된 금융회사 간 주고받을 금액을 결제기관(중앙은행, 시중은행)에 개설한 당좌계좌 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실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
- 2020년 7월 금융위원회(이하 금융위)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『전자금융거래법』 개정(안)을 발표하였지만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. 최근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합의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동법의 개정을 재추진

[표] 전자금융거래법 개정(안) 관련 주요 이슈·추진 현황 및 제언

주요 이슈	구 분	내 용
지급지시전달업 (MyPayment)	유 지	고객의 결제·송금지시(지급지시)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을 신설하였으며 스톨라이센스 역할 [제언] 지급지시전달업은 전자금융보조업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동법의 ‘전자금융보조업자’로 통일하고 구체적인 분류와 감독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
종합지급결제 사업자	철회	금융위는 ‘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’을 철회함과 동시에 선불업자의 ‘자금이체업’ 등록을 의무화하고 은행 제휴계좌를 발급하여 해당 계좌로만 자금이체를 수행하는 대안을 추진 [제언] 자금이체의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과 핀테크 사이에 실명확인, 고객확인 주체 등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기발생한 금융사고의 처리절차도 마련되어야 함



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·간소화	일부 변경	‘종합지급결제사업자’의 폐지로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[제언] 전자지급수단을 재정의해 그것을 기준으로 전자금융업종을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, 결제대행업은 결제대금예치, 전자 고지 등의 개념이 포함되도록 ‘전자금융보조업’으로 명칭 변경
오픈뱅킹의 법제도화	일부 변경	금융위는 ①차별없이 오픈뱅킹을 이용하고 ②지급지시전달업의 계좌정보조회를 위한 자격 신설 등 최소한의 조건만 부여하는 형태로 한국은행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[제언] 오픈뱅킹의 비밀번호 검증없는 타기관 출금, 신분증 진위 확인 문제 등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안·인증·표준화·정보보호 부문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
디지털 지급청산거래 제도화	철 회	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아닌 ‘자금이체업’이 활성화되면 핀테크의 간편송금이 은행 계좌를 통해 진행, 기존 청산시스템으로 자금 이동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외부 청산시스템은 불필요 [제언] 기존 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전자금융공동망에 핀테크가 추가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공통의 전문통신 양식을 활용하여 시스템 관리 부담과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

자료: 금융위원회, 언론보도(작성자 재구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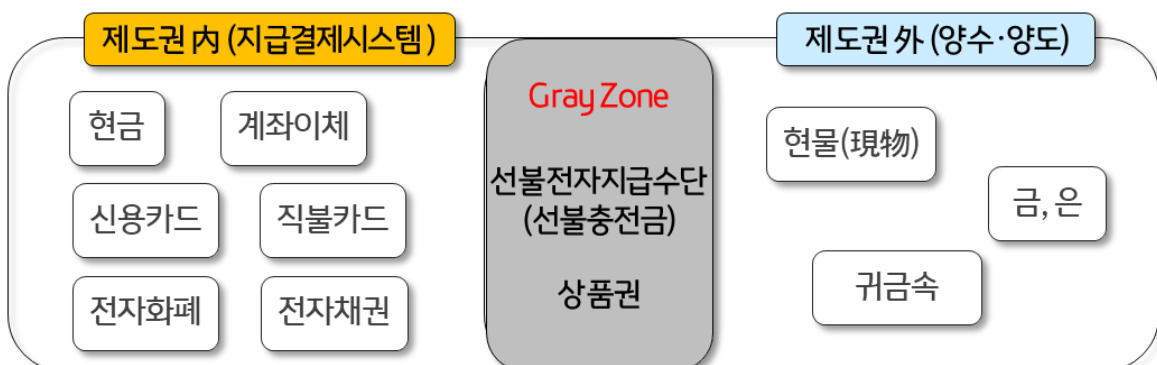
- 최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이 빈번한 가운데, 『전자금융거래법』과 시행령이 이를 신속하게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특히 시행령 규정의 내용 검토와 수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
  - [본법·시행령] 본법인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은 현재처럼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큰 원칙을 정의하는 한편, 시행령에서는 ‘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’와 ‘전자금융업종의 감독’ 등에 대해 더 강화된 세부 규정이 필요
- 2007년 시행 이후 16년 만에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 중인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은 핀테크 외에도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‘자금이체업 활성화’ 관련해서 사전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수
  - [은행 제도] 기존 은행권에 새로운 규제나 리스크 방지 업무가 추가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부실한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정상화시켜야 하며 ‘자금세탁 방지’와 ‘금융소비자 보호’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



## 1. 화폐의 발달과 지급결제의 개념

- 인류 최초 경제활동인 물물교환을 지나 여러 형태의 ‘화폐’가 지급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와 함께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이 등장
  - [물물교환] 인류가 수렵생활을 끝내고 농사와 가축으로 획득한 ‘잉여생산물’을 교환하기 시작
    - 물물교환은 현물(現物)을 주고받는 거래이므로 지급결제보다 ‘양도양수’에 가까움
      - 양도양수(transfer)는 재산·물건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을 의미하며 법·규정에 기초한 지급결제와 달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거래가 결정되는 성격이 강함
  - [금속화폐] 현물(現物)을 대체하는 금속 자체를 거래하는 것으로 지리적으로 다양한 금속들이 이용되었고 거래에서는 아직 양도양수의 개념이 강해 표준화된 제도나 시스템은 미존재
  - [주조화폐] 국가 차원에서 특정 금속에 금속의 종류와 무게 등을 각인하여 화폐처럼 사용. 양도양수보다는 지급의 개념이 강하여 실제로 국가는 화폐의 지급을 보장하였고 주조화폐 단계는 흔히 ‘금본위제도’<sup>1</sup>라고 불림 (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이 금의 총량을 넘지 못함)
  - [신용화폐] 국가에서만 지급을 보장했던 주조화폐와 달리 여러 경제 주체들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화폐 개념이며 과거와 달리 다양한 지급수단과 제도·시스템이 등장
- 한편,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선불전자지급수단(선불충전금)의 경우, 상품권<sup>2</sup>과 유사하게 지급결제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관련 법·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 [붙임1 19페이지 참조]

[그림 1] 지급수단의 구분



자료: 작성자 재구성

<sup>1</sup> 화폐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이며 쉽게 말해 화폐의 가치를 금의 가치로 표시하는 제도

<sup>2</sup> 1961년 상품권법을 제정해 38년 동안 유지하다가 1999년 2월 폐지했으며 현재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권 발행이 가능

## 지급결제의 이해 및 『전자금융거래법』 개정(안) 관련 제언

### ■ 지급결제는 다양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지급인(채무자)과 수취인(채권자) 간의 채권·채무관계를 화폐가치의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것을 의미

○ 모바일페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고,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바로 지급결제라고 할 수 있음

- 이러한 지급결제는 개인 간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금결제 시에도 빈번하게 일어날 만큼 모든 경제주체가 일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제활동 중 하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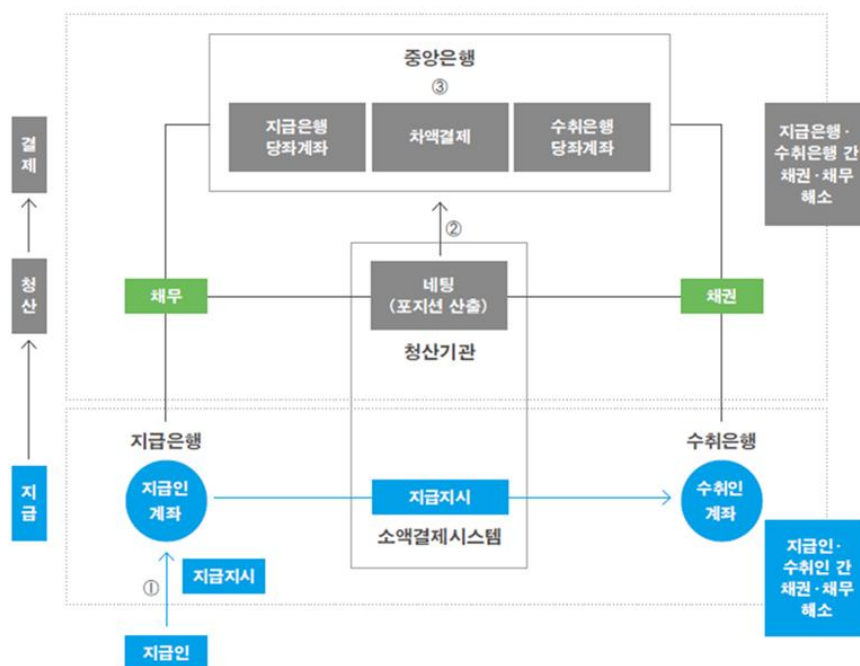
○ 한국은 각종 송금이나 결제서비스의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이는 화폐가치의 이전을 위한 메커니즘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메커니즘이 바로 지급결제제도

- 지급결제제도는 지급결제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급수단, 참여기관, 지급결제시스템, 관련 법·규정 등의 제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(Infrastructure)라고 정의할 수 있음

### ■ 한편, 평소에 지급결제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여 ‘지급’과 ‘결제’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지급결제 프로세스 상에서 ‘지급’과 ‘결제’는 서로 상이함

○ 통상적으로 지급결제는 지급수단의 『제시(지급, payment)』에서 시작하여 금융회사 간의 『청산(cleaning)』과 『결제(settlement)』 과정을 통해 마무리

[그림 2] 국내 지급결제 프로세스



자료: 금융결제원



○ 지급(Payment)

- 지급이란 지급인(채무자)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수취인(채권자)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직접 주거나 신용·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에 개설된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하는 경제행위를 의미하며 지급결제가 시작되는 단계
  - 쉽게 설명하면,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물건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이나 계좌이체,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지급
- 국제결제은행(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)도 유사하게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현금,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통해 자금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급을 정의
  - 지급에서 중요한 개념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며 이는 지급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예금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중심의 경제활동임을 의미
- 만약, 지급인이 현금을 제시하였다면 거래당사자 간의 채권과 채무는 현금의 지급과 동시에 바로 해소되어 그 이상의 별도 절차(청산, 결제)가 불필요
  - 법정화폐인 실물 현금을 거래당사자 간에 대면하여 직접 주고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현금으로 물건대금을 내면 그 자체로 결제가 완료되는 특성이 있음
- 한편,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오래전부터 예금을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전담해 온 은행이 대표적이나 최근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으로 IT기업, 플랫폼사업자 등 다양한 비금융 기관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



Focus On

[Q1]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미리 충전되어 있던 OO페이(간편결제)를 활용하여 물품대금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이것은 지급 행위에 해당하나요?

[A1] • 지급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리 충전된 OO페이를 활용한 간편결제는 지급에 해당되지 않음  
 • 실제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·간편결제는 『전자금융거래법』상 금융회사의 계좌가 필요한 ‘전자자금이체’가 아닌 ‘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’ 방식으로 운영 중

[Q2] 양도양수와 지급은 거래의 성격이 서로 다른가요?

[A2] • 양도양수(transfer)는 재산·물건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을 의미하며 정형화된 지급시스템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거래가 결정되는 성격이 강함



○ 청산(Clearing)

- 청산은 상거래 등에서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사용되었을 때 청산기관(clearing house)이 개입하여 지급인과 수취인이 주고받은 비현금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제공한 금융회사 간에 최종적인 자금이동 내역을 전달(transmitting)하는 것을 의미
  - 또한 청산대상거래의 조정(reconciling)과 확인(confirming)을 거쳐 다수의 채권·채무를 차감(netting)하여 최종 결제금액을 확정(establishing final position)한 후 결제기관으로 결제를 지시하는 과정
- 청산은 지급결제의 시작점인 지급에서 금융회사 간에 실제 자금을 주고받는 결제로 마무리 되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
  - 더불어 지급결제에서 청산 과정은 지급인과 수취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을 대신하여 실제 자금을 이전시키는 금융회사 간 채권·채무를 확정하여 결제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
- 청산 과정을 통해 다수의 금융회사 간 채권·채무를 정산함으로써 결제자금의 유동성을 대폭 절감하고 결제 관련 리스크를 감소시켜 지급결제 참가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
  - 개인 고객 대부분의 일상적인 지급결제 거래를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청산기관 역할 은 금융결제원이 담당



Focus On

[Q] 간편결제·간편송금을 서비스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청산 업무에 문제점은 없나요?

[A] • 이용자의 예금계좌 잔액에 변동이 없는 선불충전금을 활용한 간편결제·간편송금의

- 경우 외부 청산이 아닌 기업 자체적인 내부 거래를 통해 청산을 실시
- 내부거래를 통한 청산은 기업 내부의 회계조작 가능성과 자금변동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지급불능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
- 독일의 선불기반 간편결제 기업인 ‘와이어카드(wirecard)’는 2018년말 기준 총자산이 58억 5천만 유로를 기록하였지만, 2019년 내부고발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가상거래로 회계조작을 하였고 19억 유로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
- 국내는 지난해 9월 ‘무제한 20%할인’을 표방하며 선불충전금(머지포인트)을 판매한 머지플러스의 대규모 환불 사태가 대표적 사례 (피해규모 1,000억원 이상 추정)





○ 결제(Settlement)

- 결제는 청산기관에서 확정된 금융회사 간 주고받을 금액을 결제기관(중앙은행, 시중은행)에 개설한 당좌계좌 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지급은행(순채무은행)에서 수취은행(순채권은행)으로 실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
  - 비로소 지급인과 수취인에서 시작된 지급거래가 금융회사 간에 최종적으로 자금이 이전되어 채권·채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
- 결제 단계에서 금융회사 간 결제는 통상 각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계좌와 그 계좌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활용
  - 이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이 가장 안전한 결제자산이며 결제자금 부족 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
  - 우리나라 또한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 간 최종 결제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. 이에 국내에서 실질적인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유일

 Focus On

- [Q1] 직불카드 결제나 송금의 경우는 지급에서 결제까지 곧바로 진행되지 않나요?  
 [A1] • 대부분 지급인과 수취인 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당사자의 각 금융회사 간 자금의 이동은 최종 결제시점에 따라 일정 수준의 시차가 발생  
 •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 익영업일 오전 11시에 은행 간 결제가 완료됨
- [Q2]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는 결제기관으로 가능하지 않나요?  
 [A2] • 빅테크가 결제기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『동일업무·동일규제』  
 • 현재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권은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(요구불예금 7%, 예적금 2%) 은행법,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다양한 규제의 대상  
 • 하지만 빅테크는 간편송금·간편결제 등 은행권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전자금융업자로서 규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  
 • 참고로 중국의 대표적 핀테크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은행업 허가부터 받았고 중앙은행(중국인민은행)에 지급준비금도 예치하고 있으며 모든 간편결제 시스템의 청산 및 결제 업무가 ‘왕련(Nets-Union)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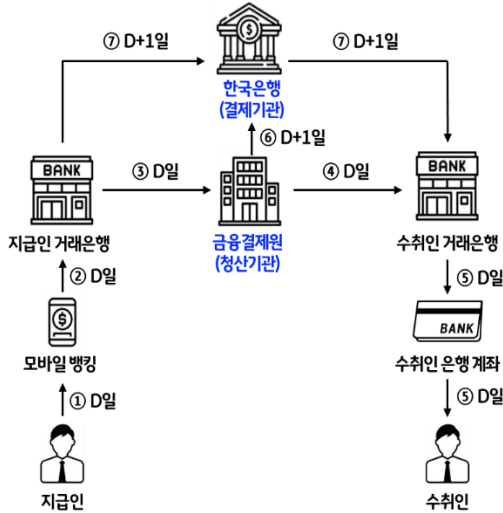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(전자)지급수단에 따른 지급-청산-결제 관련 구조도

[Case 1]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현금을 제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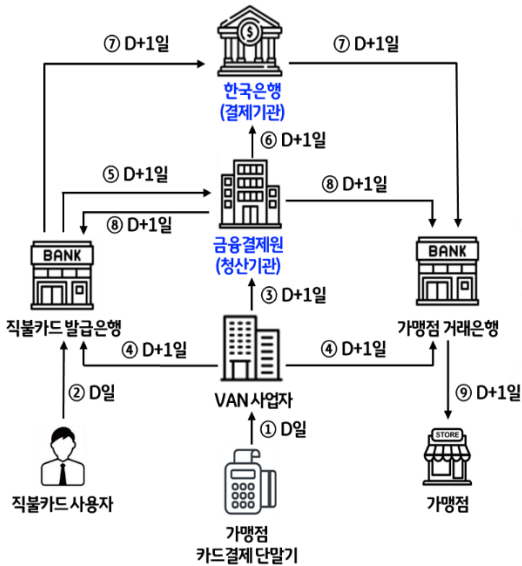
현금의 지급과 동시에 채권과 채무가 바로 해소되며  
청산과 결제과정이 불필요

[Case 2] 모바일 뱅킹을 통한 은행간 계좌이체(전자금융공동망)



- ① 지급인: 모바일 뱅킹을 통해 계좌이체 신청
- ② 모바일 뱅킹: 지급인 거래은행에 송금내역을 전송
- ③ 지급인 거래은행: 중계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 동 송금내역을 전송
- ④ 금융결제원: 수취인 거래은행의 중앙처리장치로 동 송금내역을 전송
- ⑤ 수취인 거래은행: 수취인 은행 계좌에 입금처리(당일 인출가능)
- ⑥ 금융결제원(청산기관): 차액결제자료를 한국은행에 전송(익일, 오전 10시)
- ⑦ 한국은행(결제기관): 은행간 차액결제 실시(익일, 오전 11시)

[Case 3] 직불카드로 물품을 구입(직불카드공동망)



- ① 직불카드 소지자: 거래대금을 직불카드로 결제
- ② 직불카드 발급은행: 사용자 계좌에서 직불카드 사용대금을 바로 출금하여 직불카드계정으로 이체
- ③ VAN 사업자: 당일(8:00~23:30)의 거래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제출(익일 06시까지)
- ④ VAN 사업자: 직불카드 발급은행 및 가맹점 거래은행에 거래내역 전송(익일 07시까지)
- ⑤ 직불카드 발급은행: 거래결과 집계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전송(익일 09시까지)
- ⑥ 금융결제원(청산기관): 한국은행에 은행간 차액결제 의뢰(익일 10시)
- ⑦ 한국은행(결제기관): 은행간 차액결제 실시(익일, 오전 11시)
- ⑧ 금융결제원(청산기관): 직불카드 발급은행에 차액결제내역 전송, 가맹점 거래은행에는 가맹점별 입금내역 전송(익일 12시까지)
- ⑨ 가맹점 거래은행: 가맹점 계좌에 판매대금 입금(익일 14시)

자료: 작성자 재구성



## 2. 전자금융거래법 개정(안) 관련 주요 내용 및 제언

- 2020년 7월 금융위원회(이하 금융위)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『전자금융거래법』 개정(안)을 발표하였지만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. 최근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합의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동법의 개정을 재추진<sup>3</sup>

[표 1] 전자금융거래법 개정(안) 관련 주요 이슈·추진 현황 및 제언

주요 이슈	구 분	내 용
지급지시전달업 (MyPayment)	유 지	<p><b>[개정 원안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객의 결제·송금지시(지급지시)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 신설</li> <li>• 지시전달업자는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,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보유</li> <li>• 전자금융산업에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스몰라이센스 역할</li> </ul> <p><b>[제 언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급지시전달업은 지급결제 인수를 보조하는 영업으로서 『전자금융거래법』상 전자금융보조업자<sup>4</sup>에 해당</li> <li>• 향후 지급지시의 전달 자체가 전자금융거래의 새로운 보조업으로 등장할 수 있으며 특히 수익이 창출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보조업을 예상할 수 있음(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 개인신용정보도 지급지시의 대상 중 하나)</li> <li>• 한편, 디지털 기술이 더욱 발달하고 지급매체·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자금융보조업자 역시 매우 다양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모두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의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</li> </ul> <p>⇒ 지급지시전달업은 전자금융보조업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현행 『전자금융거래법』에 마련되어 있는 ‘전자금융보조업자’로 통일하고 구체적인 분류와 감독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(시행령의 경우 해당 부처의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만 필요하므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)</p>

<sup>3</sup> 보고서 상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최근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합의한 수정 내용을 포함하며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<sup>4</sup> “전자금융보조업자”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『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』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



<p>종합지급결제 사업자</p>	<p>철 회</p>	<p>[개정 원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·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도입</li> <li>•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에 참가하여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(Payment Account) 발급 및 관리 업무가 가능</li> <li>•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전자금융업자 대비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 영위 가능</li> <li>•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 이체, 카드대금·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 가능(예대 업무 불가)</li> </ul>
		<p>[수정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은 ‘결제(Settlement)’를 담당하는 기존 은행권의 반발이 매우 심했으며 실제로 시장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‘빅테크 특혜’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 은행권은 『은행법』,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』, 『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』, 『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등 다양한 법·제도의 규제대상에 해당</li> <li>- 반면,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많은 부문에서 은행업과 유사 하지만 (동일기능) 다양한 특례를 인정받아 소비자 보호 등 다수의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(非동일규제)</li> </ul> </li> </ul> <p>⇒ 이에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철회함과 동시에 선불업자의 ‘자금이체업’ 등록을 의무화하고 은행 제휴계좌를 발급하여 해당 계좌로만 자금이체를 수행하는 대안을 추진</p>
		<p>[제 언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‘빅테크 특혜법’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폐지는 ‘금융소비자 보호’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결정</li> <li>• ‘자금세탁 방지’를 위해 전자자금이체업자인 핀테크에도 기존 금융권에 준하는 내부통제 및 보안시스템이 필요</li> </ul> <p>⇒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제휴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과 핀테크 사이에 실명확인, 고객확인 주체 등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기발생한 금융사고의 처리절차도 마련되어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편, 전자자금이체업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만 17세 미만의 청소년의 무기명식 간편송금 서비스는 불가</li> <li>• 은행계좌 연동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신분증 스캔이 필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동이 불가능</li> </ul> <p>⇒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임시방편이 아닌 법·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을 제도권 내로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</p>



<p>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·간소화</p>	<p>일부 변경</p>	<p>[개정 원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디지털 전환 등 가속화되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과도하게 세분화된 업종을 기능별(결제·송금·대행)로 통합단순화</li> </ul> <p>[수정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‘종합지급결제사업자’의 폐지로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</li> </ul> <p>[제 언] (15페이지 그림4 참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행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은 자금이체와 대금결제를 구분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를 정의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업은 지급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지급수단의 종류와 전자금융업·보조업 여부에 의해 구분되고 있음</li> <li>• 반면, 개정안에서는 지급관계에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목적(자금이체, 대금결제)을 기준으로 전자금융업종을 분류</li> <li>• 만약 이용자가 지급거래를 수정할 경우 거래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이 변하게 되는 법적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음</li> </ul> <p>⇒ 이에 기존의 전자지급수단을 재정의하여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전자금융업종을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편, 결제대행업은 직접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이를 보조하는 행위(결제·정산·예치·고지 등 대행서비스)가 주요 서비스이므로 지급지시전달업(MyPayment)과 유사하게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</li> <li>• 더불어 ‘결제대행’이라는 용어는 결제를 대신 해준다는 의미가 강하며 결제대금예치나 전자고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</li> </ul> <p>⇒ 결제대행, 결제대금예치, 전자고지 등의 개념이 모두 포함돼야 하므로 ‘지급결제보조업’이나 ‘전자금융보조업’으로 변경</p>
<p>오픈뱅킹의 법제도화</p>	<p>일부 변경</p>	<p>[개정 원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재 금융결제원의 규약으로 운영 중인 오픈뱅킹의 참가기관 범위와 자격 규정 및 보안·정보보호 등의 기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(해당 기준은 금융위가 결정)</li> <li>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준 제·개정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</li> </ul> <p>[수정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에 금융위는 ①차별없이 오픈뱅킹을 이용하고 ②지급지시 전달업의 계좌정보조회를 위한 자격 신설 등 최소한의 조건만 부여하는 형태로 한국은행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</li> </ul>



		<p>[제 언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근, 오픈뱅킹 관련하여 비밀번호 검증없이 타 기관에서 송금이 가능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이 진행되는 등의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</li> </ul> <p>⇒ 위와 같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취약 계층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참가기관의 보안·인증·표준화·정보보호 부문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</p>
<p>디지털 지급청산거래 제도화</p>	<p><b>철 회</b></p>	<p>[개정 원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핀테크에서 자체 청산하는 내부 거래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청산하고 ‘감독’을 의무화</li> <li>• 반면, 한국은행은 금융위 계획이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결제 부문을 침해하고 현재처럼 한국은행의 ‘감시’로 충분하다는 의견</li> </ul> <p>[수정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아닌 자금이체업이 활성화되면 핀테크의 간편송금이 은행 계좌를 통해 진행, 기존 청산시스템으로 자금 이동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외부 청산시스템은 불필요</li> </ul> <p>[제 언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새로운 시스템이 아닌 금융결제원의 기존 청산시스템을 활용, 효율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</li> </ul> <p>⇒ 기존 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전자금융공동망에 핀테크가 추가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공통의 전문통신 양식을 활용하여 시스템 관리 부담과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</p>
<p>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및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 등</p>	<p><b>유 지</b></p>	<p>[개정 원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 규율체계 마련, 전자금융사고 책임 범위 확대,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제도화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와 시장의 중론</li> </ul> <p>[제 언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자금을 외부 기관에 안전자산으로 예치·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매우 중요</li> <li>• 현재는 금융감독원의 ‘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’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50% 이상을 외부기관에 맡기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사안</li> </ul> <p>⇒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·제도를 신속히 제정해 머지포인트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</p>

자료: 금융위원회, 언론보도(작성자 재구성)



### 3. 시사점

- 최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이 빈번한 가운데, 『전자금융거래법』과 시행령<sup>5</sup>이 이를 신속하게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특히 시행령 규정의 내용 검토와 수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

○ [본법·시행령] 본법인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은 현재처럼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큰 원칙을 정의하는 한편, 시행령에서는 ‘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’와 ‘전자금융업종의 감독’ 등에 대해 더 강화된 상세한 세부 규정이 필요

- 현재 『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』은 본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다양한 사안들을 정의
  - 일부 전자지급수단의 요건, 허가·등록면제 요건,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본법 전반적인 내용의 세부 규정을 서술하고 있지만 일부 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규제강화 필요성 존재
  - 일례로 선불업자의 허가과 등록, 재무건전성 기준과 거래내용의 확인 등에서 더욱 상세한 세부 규정이 있었다면 머지포인트의 환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
- 본법 개정은 국회의 논의와 의결이 필요하지만 시행령의 경우 해당 부처의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만 필요하므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
  - 미국에도 국내의 시행령과 비슷한 개념의 ‘행정명령(executive order)’이 있으며 최근에 바이든이 서명한 ‘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’ 행정명령에서 볼 수 있듯 시행이 매우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미국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 중
- 무분별한 시행령 제정과 개정은 본법의 취지를 흐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는 ‘금융소비자 보호’ 측면에서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

- 2007년 시행 이후 16년 만에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 중인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은 핀테크 외에도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‘자금이체업 활성화’ 관련해서는 사전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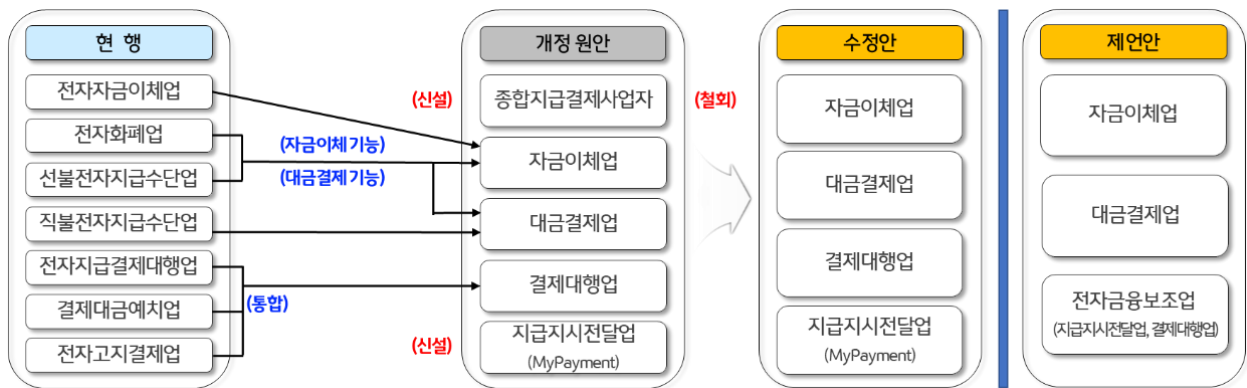
○ [은행 제도] 기존 은행권에 새로운 규제나 리스크 방지 업무가 추가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부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(핀테크)에 대한 규제를 정상화시켜야 하며 ‘자금세탁 방지’와 ‘금융소비자 보호’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

<sup>5</sup>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을 의미하며 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(대통령령)을 통해 자세한 실천방식을 규정



- 자금이체업 활성화의 가장 큰 목적인 ‘자금세탁 방지’를 위해 제휴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외에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에도 기존 금융권 수준과 유사한 규제와 함께 내부 통제 및 보안시스템 구축이 필요
  - 실명확인된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금이체업 관련하여 은행과 핀테크 사이의 『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』상 실명확인, 『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』상 고객확인 주체 등을 명확히 정의해야함
  - 더불어 착오송금, 전기통신금융사기, 보안사고 등 자금이체 관련 다양한 금융사고 대비를 위해 이에 대한 처리절차도 마련해야함

[그림 4]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·간소화 재편안 및 제언안



자료: 금융위원회(작성자 재구성)

<연구위원 박교순(kyoyahoo@kbf.com) ☎2073-5766>





**[붙임1] 전자금융거래법의 특징, 주요 개념 및 한계점**

-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이에 거래법과 감독법이 혼재되어 있음
  -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의 제1장과 제2장은 전형적인 거래법 체제이고 제3,4,5장은 감독법 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제6장과 제7장은 각각 보칙·벌칙으로 구성됨
    - 특히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개념을 기초로 지급인과 수취인으로 구성되는 ‘전자지급거래’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전자금융업자, 전자금융보조업자, 결제중계시스템 등의 다양한 개념을 정의
    - 이와 같이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의 목적, 성격 및 정의조항을 중심으로 볼 때,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은 전자지급거래<sup>6</sup>를 중심으로 거래법적 규정과 함께 감독법적 규정을 규율하고 있음
  -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은 전자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로서 2006년 제정
    - 어음·수표를 중심으로 하던 지급거래가 기술의 발달로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로 전환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전자금융거래를 명확하게 규율할 법률의 필요성이 증가
      -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초기에는 전자지급결제라는 개인간의 거래에 한정된 법률의 제정이 논의되었지만, 전자지급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감독기능도 당연히 요구될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하나의 법률에 수용함으로써 포괄적인 입법이 이뤄짐
    - 하지만 거래법적 규정을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민법, 상법, 어음·수표법 등과의 관계에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론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
      - 이에 전자지급거래에서 일반법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업자의 책임, 전자지급 효력발생시점, 거래지시 철회, 출금 동의, 전자화폐의 발행·환급·양도성 등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만 두는 ‘최소주의 입법’ 측면에서 법을 제정
    - 반면, 거래법과 달리 감독법은 해석과 판단을 위해 광범위한 규정을 두는 ‘적극주의 입법’의 입장을 취하였지만 거래법과 함께 규정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전자금융업자를 분류함에 있어 ‘전자지급수단에 따른 분류’라는 거래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
      - 이런 접근법에 따라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은 거래법과 감독법이 혼재하는 법률이면서도 법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음

<sup>6</sup> “전자지급거래”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(이하 지급인)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(이하 수취인)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



■ 전자금융거래의 중심이 되는 전자지급거래는 사용하는 ‘전자지급수단 유형’이 핵심이며 이는 거래법과 감독법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

○ 거래법적 의미

- 전자지급거래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거래로 정의
  - 해당 거래는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이뤄질 뿐만 아니라 거래의 효과도 어느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
  - 이에 전자지급수단은 전자지급거래에서 중심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전자지급수단의 유형화는 전자지급거래를 유형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준

○ 감독법적 의미

- 전자지급수단의 유형이 현금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지급수단일 경우, 이를 발행·실행하는 전자금융업자는 『전자금융거래법』에서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규율을 적용받으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성격과 사업행태에도 영향을 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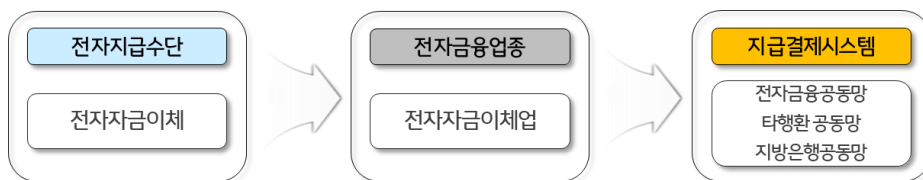
○ 지급결제시스템상의 의미

- 전통적인 지급수단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유형을 결정하였는데(어음교환시스템, 지로시스템 등)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도 종류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, 신용카드결제시스템,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 지급결제시스템이 구분되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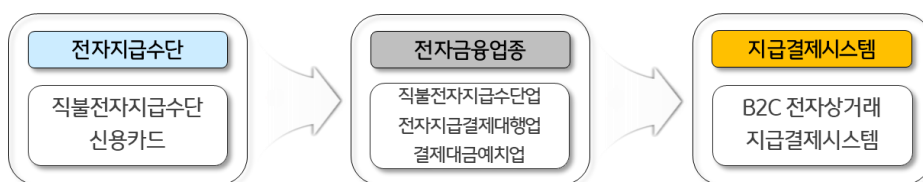
- 현행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은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업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 감독법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지급결제시스템의 유형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됨

[그림 5] 전자지급수단·전자금융업종·지급결제시스템의 연계

[Case 1]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



[Case 2]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카드로 구입하는 경우



자료: 작성자 재구성



■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은 ‘지급결제의 개념’과 ‘전자지급수단의 유형’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(선불충전금)에 대해 강제력이 있는 감독 규정도 없는 한계점이 존재

○ 앞서처럼 ‘지급’과 ‘결제’는 서로 상이한 개념이지만 현행 『전자금융거래법』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향이 강함

- 예를 들어 동법 제2조에서는 ‘전자금융거래’와 ‘전자지급거래’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, ‘전자금융거래’가 지급을 넘어 결제까지 포함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
  - 만약, 전자금융거래가 결제 부문까지 해당된다면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가 결제까지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는 은행법<sup>7</sup>과의 충돌이 불가피함
- 또, 동법 2조에서 ‘전자자금이체’는 ‘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 자금이체가 결제의 영역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함
- 이에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지급, 청산, 결제의 개념을 『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』에 추가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

○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은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을 정의하고 있지만 예시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지급수단도 존재하여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

- 학계에서는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의 효과와 수취인의 권리·의무에 관한 규정을 고려할 때, 전자지급수단은 채권형, 물권형, 혼합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의견<sup>8</sup>
  - 채권형에는 전자자금이체, 직불전자지급수단, 신용카드 등이 포함되고 물권형에는 전자화폐, 혼합형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, 전자채권 등이 포함될 수 있음
- 다른 한편에서는 전자화폐의 결제시기를 기준으로 재정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<sup>9</sup>
  - 전자지급수단의 용어를 『전자금융거래법』상 ‘전자화폐’로 통일하고 이를 지급결제자금의 하나로 인정하며 결제시기에 따라 법적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
- 향후,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등장에 대비하여 학계, 금융권 등 다양한 관련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

<sup>7</sup> 제2조 은행업의 정의와 제27조 은행의 업무범위에서 결제가 가능한 예금은 은행만 가능

<sup>8</sup> 정경영, 전자금융거래법의 체제와 최근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, 2020.11

<sup>9</sup> 김범준/엄윤경,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에 따른 『전자금융거래법』의 법적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, 2019.6



- 한편, 스마트폰 대중화로 간편송금·간편결제 이용이 활성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(선불충전금)의 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『전자금융거래법』상 이에 대한 감독 규정이 없어 보호장치는 매우 미흡한 상황
  - 2021년 기준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선불충전금(미상환잔액) 규모는 2조 9,934억원으로 2017년 1조 2,484억원 대비 140%나 증가
    - 카카오페이 3,927억 원, 네이버페이 1,985억 원 및 토스 1,15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는 3,402억 원으로 네이버페이와 토스보다 선불충전금 규모가 큼
  - 2021년 기준 매출 상위 10개 업체의 부채비율은 평균 460%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기업들을 감독할 규정이 『전자금융거래법』에서는 전무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음
    -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지급수단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법적인 기존 제도 상의 전자지급수단 유형화에만 집중하고 감독법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
    - 20년 9월부터 ‘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’<sup>10</sup>을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행정지도 수준에 그침
  -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『전자금융거래법』상의 전자지급수단 및 관련 감독법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본법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행령에 전자금융업자의 감독사항을 상세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음

<sup>10</sup> 송금기능 有 :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100%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 
송금기능 無 :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최소 50% 이상 신탁해야 함



[붙임2]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종 및 전자지급수단

- 전자금융업종은 전자자금이체업, 전자화폐업, 선불전자지급수단업, 직불전자지급수단업, 전자지급결제대행업, 결제대금예치업 및 전자고지결제업으로 정의되어 있음

[표 2] 전자금융업종 구분 및 상세 내용

구 분	내 용
전자자금이체업	<p>[법적 정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(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함)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추심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</li> </ul>
	<p>[설 명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계좌 사이에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서비스</li> <li>• 고객에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종이므로 자금세탁방지과 이용자보호 등에서 타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가 특징</li> </ul>
	<p>[전 망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철회 이후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핀테크는 전자자금이체업 등록이 의무화되므로 해당 업종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</li> <li>• 한편, 간편송금 서비스를 위해서는 은행의 실명계좌 연결이 필수이므로 내부통제 및 보안 관련하여 은행과의 이슈사항 존재</li> </ul>
전자화폐업	<p>[법적 정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미리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</li> </ul>
	<p>[설 명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화폐 가치를 미리 전자적 매체에 저장하여 지급결제에 사용하는 서비스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업과 유사하지만 현금과 유사한 지급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제일 큰 차이점</li> <li>• 전자금융거래법 시행(2007.1.1) 이후 합법적인 전자화폐로 인정받은 것은 은행 공동의 ‘K-cash’가 유일하였지만 저조한 이용률로 2020.12월에 서비스를 종료. 이에 실질적인 국내 전자화폐업자는 존재하지 않음</li> </ul>
	<p>[전 망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『전자금융거래법』 개정(안)에 따라 자금이체업과 대금결제업으로 나뉘지만 전자화폐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매우 희박</li> </ul>



선불전자지급수단업	<p><b>[법적 정의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미리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</li> </ul>
	<p><b>[설 명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화폐업과 유사하게 화폐 가치를 미리 별도 계정에 충전하고 이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서비스. 핀테크가 제공하는 간편송금·간편결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</li> <li>현행 『전자금융거래법』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는 원래 대금결제 업무만 가능하지만 2015년 금융위가 내린 유권해석<sup>11</sup>을 바탕으로 전자자금이체업 등록 없이 송금 서비스를 제공</li> </ul>
	<p><b>[전 망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정(안)에 따라 본역할인 대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금결제업으로 변경되며 간편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핀테크가 해당</li> <li>동법 개정 이후에도 대부분의 핀테크는 간편송금과 간편결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금이체업과의 경합이 많을 전망</li> </ul>
직불전자지급수단업	<p><b>[법적 정의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</li> </ul>
	<p><b>[설 명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객이 매장이거나 온라인으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상품·용역의 대금을 수취인의 계좌에 자금이체를 하는 서비스</li> <li>은행이 발급하는 현금IC카드와 카드사가 발급하는 체크카드가 대표적이며 그 외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지급수단은 이용률이 매우 낮음</li> </ul>
	<p><b>[전 망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『전자금융거래법』 개정(안)에 따라 대금결제업으로 변경되며 현재처럼 혜택과 편의성 부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와의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</li> </ul>
전자지급결제대행업	<p><b>[법적 정의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</li> </ul>

<sup>11</sup> 토스(비바리퍼블리카)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회원 은행계좌로 환급해주는 것이 전자자금이체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요청. 이에 금융위는 “자금이체업무 수행자는 금융회사이며 토스가 자금이체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”는 유권해석을 내림 이 해석은 핀테크사들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 등록으로 몰린 도화선이 됐음



	<p><b>[설 명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터넷 안에서 상품과 서비스 판매 시, 고객이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</li> <li>• 보통 ‘PG사(Payment Gateway)’라고 불리며 대부분 IT 관련 기업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</li> </ul> <p><b>[전 망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향후 결제대행업으로 변경되며 인터넷 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종은 성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. 실제로 네이버, 카카오, 토스, 쿠팡 등의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PG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</b></li> </ul>
결제대금예치업	<p><b>[법적 정의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『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3조 제2항 제10호<sup>12</sup>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</li> </ul> <p><b>[설 명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낸 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확인된 후에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</li> <li>• ‘에스크로(Escrow)’라고도 하며 일종의 거래안전장치 역할을 담당</li> <li>• 대부분 PG사가 겸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오픈 마켓의 경우 업무 특성 상 쇼핑몰 운영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결제대금예치업을 함께 영위</li> </ul> <p><b>[전 망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함께 결제대행업으로 변경되며 인터넷 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종은 성장성이 큰 것으로 예상</b></li> </ul>
	<p><b>[법적 정의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,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</li> </ul> <p><b>[설 명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기·가스 요금 등과 같은 고지서를 이메일·앱 등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하고 대금을 직접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</li> </ul> <p><b>[전 망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결제대행업으로 변경되며 최근 종이출력물을 대체하여 사회적·환경적 비용이 절감되는 순기능이 주목받고 있어 업종의 활성화가 전망됨</b></li> </ul>

자료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(작성자 재구성)

<sup>12</sup>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(이하 “결제대금예치”라 한다)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



- 전자지급수단은 전자자금이체, 직불전자지급수단, 선불전자지급수단, 전자화폐, 신용카드, 전자채권 및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구성됨<sup>13</sup>

[표 3] 전자지급수단 구분 및 상세 내용

구분	내용
전자자금이체	<p>[법적 정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(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함)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추심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의미</li> </ul>
	<p>[설 명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급수단을 직접 실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닌 전자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지급인 계좌에서 수취인 계좌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지급수단</li> <li>• 인터넷뱅킹(웹, 모바일)을 통한 자금이체(송금)가 대표적</li> </ul>
	<p>[전 망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정 후에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‘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’가 아닌 ‘전자자금이체’에 해당되므로 전자자금이체의 이용도는 높아질 전망</li> </ul>
직불전자지급수단	<p>[법적 정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(자금을 유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)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</li> </ul>
	<p>[설 명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객이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과 동시에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대금이 즉시 출금되어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는 지급수단</li> <li>• 대표적으로 체크카드가 있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밀려 활용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음.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체크카드 수는 1억 609만개로 2020년말 대비 393만매가 감소</li> </ul>
	<p>[전 망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불충전금으로 대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혜택·편의성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관계로 이용도 측면에서 어려운 경쟁이 예상됨</li> <li>• 실제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대표하는 체크카드는 연도별 발매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</li> </ul>

<sup>13</sup> 보고서 상에서는 기업간(B2B) 지급결제시스템에서만 사용되는 “전자채권”은 제외하고 그 외 전자지급수단만 서술





선불전자지급수단	<p><b>[법적 정의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며 다만, 전자화폐는 제외</li> <li>① 발행인(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)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</li> <li>②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</li> </ul>
	<p><b>[설 명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객이 은행 계좌 등을 통해 화폐 가치를 별도 계정에 미리 이전(충전) 시켜 놓고 이를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</li> <li>전자화폐와 달리 약정에 따른 환급(환불)만 허용되고, 현금채무의 지급 수단으로서 사용하더라도 이는 약정에 의한 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다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제가 완결되어야 현금채무 이행의 효과가 발생</li> </ul> <p><b>[전 망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앞으로도 현재처럼 간편결제 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며 특히 『전자금융거래법』 개정(안)에 따라 기명식 선불충전금의 충전한도가 5백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더욱 빠르게 카드를 대체할 수 있음</li> </ul>
전자화폐	<p><b>[법적 정의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의미</li> <li>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</li> <li>② 발행인(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)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</li> <li>③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</li> <li>④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</li> <li>⑤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</li> </ul>
	<p><b>[설 명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용자가 IC칩이 내장된 금융카드나 네트워크 등 전자적 매체와 화폐의 가치를 미리 충전하고 지급거래 시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지급수단이며 화폐의 전자거 대응수단으로서 도입</li> <li>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범용성을 요건으로 하며, 환금성이 부여되었고 현금채무 결제의 효과가 보장됨. 그러나 실제 사용은 주로 교통요금 지급에 한정되었고 이마저도 저조한 이용률로 서비스가 종료</li> </ul>
	<p><b>[전 망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밀려 실질적인 활용도는 없는 상황</li> </ul>



신용카드	<p><b>[법적 정의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것을 의미</li> </u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금전채무의 상환</li> <li>②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3조 제1항<sup>14</sup>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</li> <li>③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1호의<sup>215</sup>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. 다만, 외국인이 『관광진흥법』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</li> <li>④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</li> </ol> <hr/> <p><b>[설 명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후불카드인 신용카드는 현금, 수표에 이어 제3의 화폐라고 할 만큼 국내 지급수단 중 이용자의 선호도와 이용률이 매우 높음</li> <li>•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국내 신용카드는 1억 1,769만매이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보유수는 4.2매로 나타남</li> <li>• 더불어 민간최종 소비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7.8%(779조 346억원)</li> </ul> <hr/> <p><b>[전 망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혜택과 같은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여러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용자의 높은 선호도와 이용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</li> <li>• 다만,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용카드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카드시장 내부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전망이다</li> </ul>
------	--

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(작성자 재구성)

<sup>14</sup> 이 법에서 “금융투자상품”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,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,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

<sup>15</sup> “사행성게임물”이라 함은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,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, 『한국마사회법』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, 『경륜·경전법』에서 규율하는 경륜·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, 『관광진흥법』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,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로서,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